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 731-6156 / 전송 731-6562


문서번호 법무 11010-949

시행일자 1994. 6. 21

경유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위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홍영재		
법 제 제 장	김		
기안	이용법		협조

재목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등 3건발령

1.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등 3건을 별첨 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1.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 1부.

2.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요령개정요령 1부.

3. 서울특별시민원실내부운영규정폐지규정 1부. 끝.

홍영재 94-06-21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등 3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81-801 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(제 3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등 3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4. 6. 25.

검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291 호(생략).



서울특별시  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수신처 공보담당관, 시민과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선교예관안법률 위반자구제부과.정수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4년 6월 25일

서울특별시장 9



#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안

## 1. 제정사유

현행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(신고태만, 허위신고시 50,000원 이하)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함 (안 제2조).

위반행위종류	해 태 기 간	과 태 료
신 고 태 만	10일이하	35,000 원
	11일이상 20일이하	40,000 원
	21일이상 30일이하	45,000 원
	31일이상	50,000 원
허 위 신 고	—	50,000 원

나. 과태료 부과절차와 서식등을 정함 (안 제3조 내지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·동법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안 별첨

##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·징수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 및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태료부과 기준)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 (과태료의 처분통지 등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법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 (과태료납부기한 등)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,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부과·징수된 과태료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·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과태료수납부 비치·관리)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 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< 별 표 >

## 과 태 료 부 과 기 준

(단위 : 원)

위반행위종류	해 태 기 간	과 태 료
신 고 태 만 (설립·변경·해산)	10일이하	35,000
	11일이상 20일이하	40,000
	21일이상 30일이하	45,000
	31일이상	50,000
허 위 신 고 (설립·변경·해산)	—	50,000

※ 비 고 : 신고태만·허위신고가 병합될 경우에는 그중 최고금액의  
과태료를 부과한다.

# 과태료 처분 통지서

제 호  
수 신  
제 목 : 과태료 처분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 
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 
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 
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 
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를 제기한 때  
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 
○○구청장

인



< 별지 제2호서식 >

### 과태료 납부통지서

( 개인통지용 )

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		
위반사항: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		
납부의무자	성 명	
	주 소	
과태료금액		

위의 과태료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까지 (      은행)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수납일부인

서울특별시장      인  
○○ 구청장

( 수납은행 보관용 )

제 호 과태료납부서		
위반사항: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		
납부의무자	성 명	
	주 소	
과태료금액		
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수납일부인

( 시 통보용 )

제 호 영수권뫑지서		
위반사항: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		
납부의무자	성 명	
	주 소	
과태료금액		
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
통지합니다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수납일부인

서울특별시장      귀하  
○○ 구청장

## 과태료납부독촉장

납부의무자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	
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				
⑤ 위반사항	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			
⑥ 과태료금액		⑦ 당초납부기일	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19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 까지    에  
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 
징수하게 됩니다.

19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서울특별시장  
○○구청장

인

< 별지 제4호서식 >

## 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

주 소 :

성 명 :

① 고지금액	② 취소(변경)액	③ 차 액	비 고

취소(변경)사유 :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 
○○구청장

인

< 별지 제5호서식 >

##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

신 청 인	① 성 명	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④ 부 과 기 준		⑥ 납부봉지서번호	
	⑤ 고지받은일자		⑦ 과태료 금액	
	⑧ 과태료처분사유			
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
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 
대하여 불복의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 
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
○ ○ 구 청 장

##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

제 호			
수 신	-	발신 서울특별시 ○○ 구청장	인
제 목	: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,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	① 성 명 (한자)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	
과 태 료 처분내역	④ 고지일자	⑥ 과태료 금액	
	⑤ 부과기간	⑦ 이의제기일자	
<p>첨부 : 1.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</p>			

< 별지 제7호서식 >

## 과 태 료 수 납 부

① 일련 번호	② 통지서 번호	③ 과태료 처 통지 일	④ 과태료 장 발부일	납 부 기 한		⑦ 금 액 (천원)	납 부 의 무 자		⑧ 과태료 납부일	이 의 제 기	
				⑤ 당 초	⑥ 독 속		⑨ 심 명	⑩ 주 소		⑪ 이의제기일	⑫ 법원통보일